

참고자료.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가. 시설자금

사업명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2008년도 1/4분기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 신규대출 기준	2008년도 지원금액 (백만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지역냉난방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없음	8년거치7년 분할상환	6.00%/년	110,000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500억원 이내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3년거치5년 분할상환	3.25%/년	283,650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사업	20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사업	200억원 이내(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100억원 이내 (동일사업자당)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200억원 이내 (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	300억원 이내 (건설하기사업장당 100억원 이내)	2년거치2년 분할상환	3.25%/년	30,000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	300억원이내(동일사업자당) 다만, 동일투자자당 150억원 이내	※주2) 참조	3.25%/년	170,000
	ESCO 투자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 투자사업	50억원 이내	3년거치5년 분할상환	3.25%/년	44,500
소계					528,150
합계					638,150

주1) 위 표의 이자율과 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ESCO사업에 대한 대출기간은 아래와 같음

상환기간	해당사업
3년거치 2년분할상환	II.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중 전기설비 III.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전기설비 VI.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중 전기설비 VIII. 수요관리투자사업
3년거치 7년분할상환	II.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 중 열설비 III.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열설비 IV.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사업 VI.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중 열설비

※ 전기설비와 열설비가 복합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설비(사업비의 50%이상)에 따름

나.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사업명	지원대상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2008년도 1/4분기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10억원 이내	1년거치2년 분할상환	3.25%/년
	· ESCO			
	·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기업			

주1)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다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 (중소기업에 한함)

사업명	지원대상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비율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사업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5천toe 미만인 중소기업	지원규모(지원한도액)는 공단의 C등급 진단비용의 70% 이내

주1)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 자금지원대상자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음)

사업명	자금지원대상자
I.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II.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	○ 에너지이용협약회법 제12조의2에 의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III.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다만, 등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
IV.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사업	○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V.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VI. 지역에너지개발사업	○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
VII. 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중소창업기업
VIII. 수요관리투자사업	○ 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IX.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자
X. ESCO투자사업	○ 에너지이용협약회법에 의한 ESCO로 등록된 자 또는 에너지사용자로서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XI. 중소기업진단비용 지원사업	○ 에너지이용 협약회법에 의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최근 연도에 신고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5천toe 미만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지침 주요 변경사항

1. 에너지절약설치사업(전력수요관리사업 포함) 1.5%p 이자율 인하

- 4.75%/년 ⇒ 3.25%/년 <2008년도 신규 대출분에 한정>

2. 대상시설 및 지원조건 변경

- 대상시설(품목) 중 1개 품목(기타설비) 제외 (109개 품목 → 108개 품목)
 - 신규설비 공모를 현행 년 1회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
- 전년도 12월에 착수된 사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자금추천신청 최저한도 상향(현행 1,000만원 → 2,000만원)
- 자금지원율 상향
 - 중소기업(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포함) : 100% 이내(현행 90%)
 - ESCO 성과보증방식 : 100% 이내(현행 80~90%)
 - 자발적협약(VA)기업 투자사업 : 10%우대(대기업:90%, 중소기업:100%)
- 「대·중소기업 에너지절약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에 준하여 지원

3. 고객만족 및 관리강화

- 금융기관 요청시 최초자금 인출기한을 1개월 연장 허용
- 자금사용 위반을 발생시킨 설비업체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4. 자금 배분방식 개선

- ESCO투자사업 9월말 기준으로 잔여예산이 발생시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접수순으로 지원(종전 7월말 기준)
- 집단에너지자금을 지원방식을 “일괄 접수후 추천방식”으로 개선